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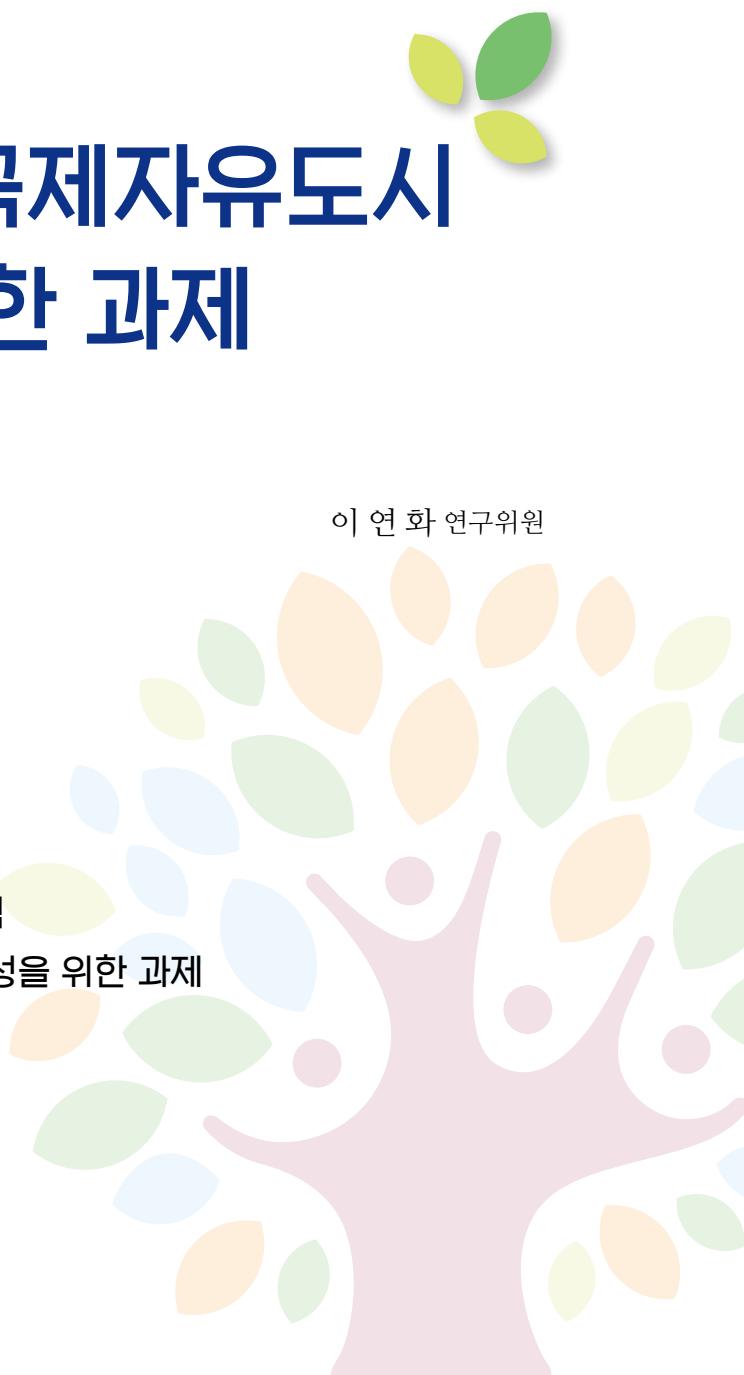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1. 5. 31 | 발행인 : 민무숙

아동친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이연화 연구위원

목 차

1. 논의의 필요성
2.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징
3. 국내·외 아동친화도시 주요 정책
4. 아동친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1. 논의의 필요성

- 최근에 도시에서 아동¹⁾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CFC)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잘 성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신정엽, 2018²⁾)
- 전 세계가 아동친화도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인식 때문임. 지금까지 세계 196개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으며, 59개 국가가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거나 추진 중에 있음(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21)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9)에 근거해 2020년 『제주 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실시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국내 52개 시 · 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현재 111개 시 · 도 · 군에서 향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에 있음(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2021)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생산 가능 인구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제도에 아동참여와 아동권리가 충분히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미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 될 아동친화도시의 특징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와 주요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국내 · 외 아동친화도시 주요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아동친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징

■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 1996년 「아동친화도시」를 유엔에 발의한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로 정의함(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³⁾

1) 아동의 나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근거해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2) 신정엽(2018),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 7권3호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9), 「알기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어린이 의견의 존중)과 4대 기본권(생존 · 보호 · 발달 · 참여의 권리)으로 구성됨

표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조항	원칙	내용
제2조	비차별 원칙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제3조 1항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제6조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함

자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icef.or.kr>)

표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구분	내용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자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icef.or.kr>)

- 도시공간과 도시계획수립 연구자들은 아동친화도시를 특별히 도시에 사는 아동의 안전한 거주와 성장, 아동 삶의 질 개선을 목표한다고 봄(신정엽, 2018). 이선주 · 김성길(2020)은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교육, 권리, 복지, 치안 등 광범위한 지원을 함의하고 있는 ‘사회’로 해석함⁴⁾
- 이러한 정의들을 토대로 볼 때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안전한 거주와 성장, 아동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천되며, 아동의 교육, 권리, 복지, 치안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4) 이선주 · 김성길(2020),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국토연구. 제105권(15~30)



■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징

-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징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조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유엔 기구인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은 지방정부가 9가지 구성요소를 갖추도록 제안함. 한국의 경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한국의 특징을 반영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음

표 3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원칙	내용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아동관련 사업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이 기구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교육 및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함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아동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아동을 포함한 시민에게도 공개해야 함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일반현황조사와 아동친화도 조사를 종합하여 아동권리현황조사를 하여야 함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수립	일반현황조사, 아동친화도 조사,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아동관련 현황 등을 토대로 아동권리이행전략을 수립해야 함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4개년 추진계획서에 기술된 전략사업에 대하여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사전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아동권리 사후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변화한 행정체계와 사업의 실행이 얼마나 아동의 삶과 권리증진에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출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 아동친화도시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추진을 지원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둘째, 성인에 비해 아동은 정책의 결정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이 쉽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관련 제도와 예산에 대한 아동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셋째,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기구를 설립하고 도민과 아동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함
- 넷째, 아동관련 일반현황조사, 아동친화도 조사,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함

3. 국내 · 외 아동친화도시 주요정책

- 본 절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국내 · 외 지역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 국내 타시도 아동친화도시 주요 정책

- 최근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2017)와 부산광역시(2019)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관련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 경기도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4> 참조)
- 경기도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수립,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관련 사업, 아동의 참여체계구축을 중심으로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표 4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주요 사업

사업명	대상/기간	내용
홈페이지 운영	수원시 전체/연중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 전체/매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분석
아동친화 예산서	수원시 전체/매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 분석, 아동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작성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수원시 거주 아동·청소년/연중	-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의 기회 제공 -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의견 정책사업 반영
아동권리 교육	수원시 거주 아동,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등/연중	-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로 아동권리 인식 확산 - 아동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책임지고 긍정적 변화 유도
아동인권 상담창구 (옴부즈퍼슨)	아동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주중	아동권리 상담 및 조사 전담

출처 : 경기도 수원시 홈페이지(2021.5월)에서 재구성

- 부산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아동참여기구운영, 아동권리옹호사업,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으로 나누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표 5> 참조)

표 5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주요 사업

분야	주요 내용		
	사업명	대상 / 주기	활동
아동참여 기구운영	의회 홍보관 견학	아동, 일반시민	의회홍보관, 의회마당, 본회의장 견학 및 설명
	의회교실	초3~6학년	의회의 기능과 역할 설명, 모의 의회 체험
	어린이 의회	만 7~12세, 1~6학년	어린이 정책제안 및 정책토론회 참여
	의회교실	중~고등학생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몽의 의회, 의원과의 대화 등
	청소년 의회	만13~18세 미만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정책토론회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모든 청소년	정기회의, 워크숍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운영 참여



분야	주요 내용		
	사업명	대상 / 주기	활동
아동참여 기구운영	청소년정책 아이디어경진대회	모든 청소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아동정책 토론회	만7~18세 미만	아동 주도 정책원탁 토론회
	청소년재능기부봉사단	청소년 동아리	지역사회에 청소년 재능 기부
아동권리 옹호사업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 아동관련 종사자, 교사, 부모, 일반시민	찾아가는 대상자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실시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아동가족 2,000명	4km 아동권리 체험 마라톤 및 부대행사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신규 놀이터 조성 및 노후 놀이터 개보수	아동 욕구에 맞춘 놀이터 조성 및 노후 놀이터 개보수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매 4년마다 실시	아동의 삶과 정책욕구 파악 후 정책 개발
	아동영향평가	매 4년마다 실시	정책 실행 전후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 정책의 부정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2021. 5월)에서 재구성

- 경기도 수원시와 부산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아동의 참여체계구축,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인권기구설치,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로 아동영향평가 · 아동예산분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외 아동친화도시 주요 정책

- 국외 아동친화도시사업을 도입한 프랑스, 독일, 핀란드 사례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⁵⁾
- 유럽에서 아동친화도시를 2002년부터 추진한 프랑스, 2007년에 추진한 독일, 2012년에 도입한 핀란드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을 살펴보고자 함(<표 6> 참조)
 - 프랑스는 아동친화도시 핵심요소를 아동참여, 비차별, 모니터링으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연합회 결성, 청년대사 프로그램 등 아동의 정책참여제계를 구성함. 또한 비차별과 평등관점에서 장애아 ·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개발, 다양한 계층의 공동주거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독일은 아동참여와 비차별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 취약계층아동과 난민의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위원회를 운영함. 또한 아동친화도시협의회에서 점검표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 핀란드는 아동참여와 비차별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참여관련 법 제정, 아동 및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어린이 정책 용어사전 편찬, 지자체 모든 부문에 대한 아동영향평가와 지자체 기관 대상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행정 부문 간 협업에 대한 조직문화를 모니터링 함

5) 제주특별자치도의 수탁을 받아 본 연구원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의 국외사례를 참고 함

표 6 프랑스, 독일, 핀란드 아동친화도시 주요 사업

구분	핵심사업요소	내용
프랑스	아동참여와 비차별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 구성, 전국 '아동청소년 위원회'연합회 결성, 청소년 대사 프로그램운영, 학교와 연계한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제고, 장애아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제시,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 비차별 및 평등 정책은 국가적 및 지자체의 우선순위임
	모니터링	아동친화사업은 지자체가 아동을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간주됨,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갖는 것임, 국가위원회가 인증과 영향평가를 담당함
독일	아동참여와 비차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을 아동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작성함, 다양한 취약아동 포함 아동권리현황설문조사실시,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아동참여를 위한 아동위원회 운영, 난민과도 회의를 운영함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협의회는 매 6~8개월마다 점검표로 모니터링을 함
핀란드	아동참여와 비차별	아동 및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청소년위원회 운영, 어린이 정책용어 사전 편찬, 아동참여관련법 제정, 평등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어떤 유형의 차별도 배제하고 있음
	모니터링	지자체 전 부문(학교, 도시계획 등)에서 아동권리 반영여부,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자체 기관 대상 인지도, 행정 부문 간 협업에 대한 조직문화와 어려움 등 모니터링실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 재구성

- 국외 아동친화도시 주요 사업을 통해 유럽은 아동의 참여, 비차별, 모니터링을 아동친화도시의 중요한 핵심가치로 두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참여하는 참여체계구축, 관련법 제정,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인권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아동친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징과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담부서구성, 관련 법제정, 아동참여시스템구축, 아동영향평가 · 아동예산분석시스템 구축,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인권 기구설치, 아동친화도시 교육과 홍보사업,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살펴보았음
- 본 절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함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아동친화도시 사업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예정임. 또한 최초 인증 후 4년 뒤인 2028년에 상위단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주요과제로 선정해 제도적 지원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모든 아동의 참여확대와 아동의 권한 강화 지원

-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동의 참여, 아동권리, 평등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장 먼저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친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책참여체계구축과 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 인권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동인권기구를 통해 도민 대상 인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친화환경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아동에게 보건, 교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해야함
-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공간 조성,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조성 등 아동친화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아동영향평가체계 구축 및 제도화

- 향후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친화 사업인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영향평가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속적인 아동영향평가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63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2층
T.(064)720-4922 F.(064)711-2349 www.jewfri.kr